

행정 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와, 행정명령 202.36호, 202.37호 202.46호, 202.47호, 202.54호, 202.58호, 202.59호, 202.65호 및 202.70호에 포함된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모든 지침을 행정명령 202.76호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바와 같이 2021년 1월 17일 일요일까지 30일간 더 지속하며, 다음을 본 행정명령 일자부터 2021년 1월 17일 일요일까지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합니다.

-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459-c항 세부절 7, 7-a 및 8 및 부동산세법 제467항의 세부절 5, 5-a, 5-b, 5-c 및 6, 평가 단체의 관리 기관이 평가자가 2021년 평가 대장의 해당 섹션에 따라 2020년 평가 대장에서 해당 면제를 받았던 모든 재산 소유주에게 면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이로써 해당 사람으로부터 갹신 신청서를 받을 필요성을 면제하고 추가로 평가자가 해당 사람에게 갹신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요건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관리 기관이 옵션으로 해당 결의안 절차에 이를 통해 평가자 본인이 2020년 평가 대장에서 면제의 자격이 있었던 소유주가 주요 거주지를 변경했거나, 증서에 다른 소유주를 추가했거나, 재산을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전했거나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갹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포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반대의 법률 또는 규정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평가 및 치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의료 기록 유지 의무, 또는 진단 코드 배정 의무 또는 청구 목적의 기록 및 유지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 유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합리적이며 선의로 행동하는 사람은 기록 보관 요건 미준수 시,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절대적인 면책권을 누립니다. 본 조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선의로 행동하는 사람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 기록을 유지하는 데 대한 요건.
- 가정법원법(Family Court Act)의 모든 일시 중지가 2020년 12월 18일까지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공한 행정명령 202.76호는 이에 따라 가정법원법의 모든 일시 정지가 향후 행정명령으로 인해 연장 또는 수정된 바에 따라 본 행정명령의 만료까지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제공하도록 수정됩니다.

- 코로나19 임대 구제법(Rent Relief Act)을 제정하는 2020년 법률 125장, 임차인이 2020년 3월 이전에 총 월 소득의 30%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 구제의 지불을 해당 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에 따라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또한, 비상사태 동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 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1년 1월 17일 일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

- 세법(Tax Law)의 제1145항에 따라 늦은 제출 및 지불 벌금을 경감할 수 있는 조세재무부(Taxation and Finance) 커미셔너의 권한은 커미셔너가 이자를 91일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커미셔너의 권한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수정됩니다. 이는 2020년 11월 30일에 완료된 분기별 판매세에 대한 환급 신청과 판매 및 이용세를 2020년 12월 2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020년 12월 18일에 "오렌지군"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여 행정명령 202.81호 또는 행정명령 202.68호에 의해 실내 식사를 중단해야 했던 레스토랑 및 기타 음식 서비스 시설에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1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